

1. 개정이유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5종)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안 제7조의2)

-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

다. 기타 조문 개정 및 문구 삭제(안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 전입신고 서식 통합(영 별지 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시행규칙상 사전동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만나이 폐지에 따른 조문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등·초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법정대리인 확인에 관한 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별표 제8호”를 “별표 1 제8호”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사용인감계”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만 17세”를 “17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별표 제8호”를 “별표 1 제8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본인이나 세대원:”을 “본인:”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본인이나 세대원:”을 “본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0.>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정정·변경 []삭제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청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기록 신청	기록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국적동포			
		로마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한글 성명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관계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 [] 세대원의 직계혈족		
		세대주와의 관계	※ 기록 대상자(외국인등)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속할 세대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정정· 변경 신청	대상자 성명	로마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한글 성명			
	정정· 변경사항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기록 대상자(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			
	정정· 변경 전			정정· 변경 후	
삭제 신청	대상자 성명	※ 로마자 또는 한글성명을 작성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정정·변경 []삭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록 대상자와의 관계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자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체류지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외국인등이 체류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 3. 외국인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계기관 자료열람 동의서

본인은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정정·변경·삭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등록자료, 국내거소 신고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외국인등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정정·변경은 본인이나 속할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의 삭제는 외국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록 대상자’의 성명란에는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성명란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이 삭제됩니다.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체류지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4호 중 “기재됩니다”를 “기재되며,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기재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모·자녀 등 「민법」 제779조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세대주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모·자녀 등 「민법」 제779조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세대주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별표 2, 별지 제1호의15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체류자가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2. ‘변경대상자’란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 ‘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쓰시기 바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신고를 위임받아 신고하는 사람은 ‘위임장’란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또는 준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8서식]

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휴대전화번호		
신청 대상 건물 · 시설 주소지	주소 (우)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합니다.	
신청 서비스	전입신고 사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세대주 변경 사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사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사실	[]휴대전화 문자 전송	[]우편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제20조제3항, 제41조의2 및 제47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입신고 사실,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세대주 변경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사실이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규, []변경,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 ·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4.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읍 · 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배송되거나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 초본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 ·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7. 신청 대상 건물 · 시설과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통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문자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사정에 따라서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신청한 서비스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0. 모든 통보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본인이 신청 · 변경 ·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법정대리인 확인서

확인 대상자 (미성년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구분 ※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전입신고(「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대한 확인		
법정대리인 1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대상자와의 관계 부·모·기타 후견인()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법정대리인 2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대상자와의 관계 부·모·기타 후견인()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본인(들)은 확인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확인 구분에 따른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작성하신 연락처는 대표자 외 공동친권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__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 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6. 변동 사유	[] 포함(□세대, □세대원)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table border="1"> <tr> <td>세대 전부</td> <td>□</td> <td></td> </tr> <tr> <td>세대 일부</td> <td>□</td> <td>()</td> </tr> </table>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 '세대 일부' 선택 시, 포함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성명 기재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체)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__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일반,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 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 표기를 선택하거나 이해관계자 발급시에 반드시 작성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표를 합니다.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 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세대원이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신청인은 "신청 내용"란의 각 항목에서 "포함"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선택사항 미선택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만 표기됩니다.
5.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7.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8.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초본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상세표시되는 등·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0.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11.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13. 등본의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초본의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또는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을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Viewing on a Resident Register or Issuance of its Certified Copy or Abstract



※ Please read the guidanc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before you fill out the form, and check (☒) where appropriate. (Page 1 of 3)

Applicant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City/Province) (City/County/District) ※ Please write down your city or province and then city, county or district (Detailed address not required).		
	Relationship (to the person whose info is requested)		Phone No.
	☐ Apply for fee exemption ※ Regarding eligibility for fee exemption, please refer to Note 3 on the back page.		
Applicant (Corporate)	Name of Business		Business Registration No.
	CEO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Business)
	Address		
	Name of Visitor	Resident Registration No.	Contact No. (Visitor)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 Leave this section blank if you are requesting your own information or certified copy/abstrac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viewing of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ertified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7 and 4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Day Month Year

To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Submission by applicant	Identification card(such as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its copy of the delegator(Only submit when you are applying on behalf of the delegator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f Article 29(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Documents to be verified by official in charge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if you consent to allow the official in charge to verify the following documents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1. Form of identification and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proving that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view of resident register or apply for an issuance of its certified copy or abstract
	☐ 2.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cipient of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 patient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 war veteran,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 Please check ☒ if you consent to allow the official in charge to verify the following documents through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3. Applicant's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Detailed)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 my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shared use as st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rticle 7 (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pplicant(Delegato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onsent to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 Check (☒) where appropriate.

- ☐ 1. I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bout me by a official in charge of the civil complaint handling agency through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 ☐ 2. I consent to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quired for processing this applic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the applicant does not consent to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if the documents are not verifiable through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Applicant(Delegator)

(Signature or Seal)

	Request	[] A certified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ne can request for necessary information only from the list below of information provided on a certified copy or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If you do not choose either "Included" or not, only the basic information such as name, date of birth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the person concerned will be provided. [] All items of a certified copy included [] All items of an abstract included									
Information to be Provided	Certified Copy Issuance [] copy (ies)	1.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Fill in : the last ____ years included							
		2. Reason for household registration	[] Included						
		3. Date of household registration	[] Included						
		4. Date of event / Date of report	[] Included						
		5. Reason for change	[] Included ([] Household, [] Members)						
		6. Names of householder, household members and foreigner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 Included						
		7. Last 7 digits of resident registration no.	[] Include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40%;">All members</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Selected members</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able> ※ Please write down the name of householder or members to be included in the blank.		All members	[]		Selected members	[]	()
		All members	[]						
		Selected members	[]	()					
8. Household members'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 Included ([] Basic, [] Detailed)								
※ If you choose 'basic', family members(except for the householder and his/her spouse) will be displayed as "household member", and the rest will be displayed as "cohabitant". If you choose 'detailed', note that your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will be displayed.									
9. Cohabitants	[] Included								
Abstract Issuance [] copy (ies)	1. Personal information changes [] Included ([] Names, [] Resident registration no., [] All included)								
	2.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All included [] Fill in : the last ____ years included								
	3. Name of householder and the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in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Included ([] Basic, [] Detailed)								
	※ If you choose 'basic', family members(except for the householder and his/her spouse) will be displayed as "household member", and the rest will be displayed as "cohabitant". If you choose 'detailed', note that your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will be displayed.								
	4. Last 7 digits of resident registration no.	[] Included							
	5. Names of householder and the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 Included ([] Basic, [] Detailed)							
	※ If you choose 'basic', family members(except for the householder and his/her spouse) will be displayed as "household member", and the rest will be displayed as "cohabitant". If you choose 'detailed', note that your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will be displayed.								
	6. Date of event / Date of report	[] Included							
	7. Reason for change	[] Included							
	8. Military service records [] Included ([] Basic (Date of enlistment/discharge), [] All included)								
	9.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 Alien registration no.	[] Included							
Purpose	※ Fill out the blank if you wish to be provided with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or you request for information of a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your household								
Proof documents									

Notes

1. When you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 or abstract, you must submit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 ;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you must submit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domestic resident report card. If you visit as a representative of your company, you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as well as your employment ID or a proof of employment.
2. When you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check your or his/her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the copy or abstract only by submitt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 you or he/she can do so by printing your or his/her name on a digital signature pad.
3. Those who are eligible for fee exemption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e as follows:
 - a.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pplies for it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of Article 29(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b. Where a recipient under Article 2(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ies for it;
 - c.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tropolitan Cit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ity/Country/District/Town/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such as in the event of disasters;
 - d. Where fee exemption for provid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is prescribed in any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e.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national independenc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pplies for it;
 - f. Where a person who ha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for it;
 - g. Where a patient suffering from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register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Etc.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h. Where a war veteran register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of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applies for it;
 - i.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and determined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pplies for it;
 - j. Where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k. Where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Article 5 or Article 5-2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pplies for it;
 - l. Where a person who has two or more children (grandchildren in case of a family consisting only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ho are minors on the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applies;
 - m. Where the first copy of abstract of a person whose birth has been registered is issued; and
 - n. Where fee exemption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4. Select either “Included” or not for each numbered item on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section. If you do not choose “All items included”, only the basic information such as name, date of birth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or the person concerned will be provided.
5. In some cases, such as when you need an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er of a debtor in order to register his/her inheritance by subrogation, you may request or be provided with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6. As for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when you choose “Fill in”, the period should be filled out by the year.
7. For the issuance of an abstract of resident register: As for the “3. Name of and relationship to the previous householders in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information, if the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is a legal adult, the person concerne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can choose “Included.” And, if the person whose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is a minor, a householder, a lineal ascendant, 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can choose “Included.”; as for the “8. Military service records” information, only the person concerned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or a person entrusted with the power) as well as your family member referred to in the Article 29 (2) 5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for public affairs only) can choose “Included.”
8. If a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concerned or a member of your household wishes to be issued with a copy or abstract of your resident register or if a person wishes to be provided with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he/she must fill out the “Purpose” section because the purpose shall be printed on the issued copy or abstract, and in case of applying for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er, he/she must submit separate evidentiary documents.
9.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 of Article 37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f you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its copy/abstrac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you shall be sentenced to less than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less than thirty million won.
10. If you wish to request information on the register of more than one person or receive their copies/abstracts with the same evidentiary documents for the same purpose, you may apply for them all at once by using Form 7 and Form 8. In that case, you must put the two forms together in order, fold the first page (Form 7) in half, and stamp your personal seal in the center where the edge of the folded paper meets the next page (Form 8).
11. If you are a foreigner who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 of the “The Immigration Act” or a foreign national Korean who reported your domestic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6 of the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o” section.
12. When requested by the officer in charge, you must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its copy) of the delegator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power of attorney.
13. As for the “8. Household members’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for the viewing on a resident register), and “3. Name of householder and the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in the records of change of address” • “5. Names of householder and the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for issuance of an abstract of resident register), if you choose ‘basic’, family members(except for the householder and his/her spouse) under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will be displayed as ‘household member’, and the rest will be displayed as ‘cohabitant’. If you choose ‘detailed’, note that your detailed household members’ family relationship to the householder will be displayed.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 []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__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5. 변동사유 [] 포함([] 세대, []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table border="1"> <tr> <td>세대 전부</td> <td>☐</td> <td></td> </tr> <tr> <td>세대 일부</td> <td>☐</td> <td>()</td> </tr> </table>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	()							
※ '세대 일부' 선택 시, 포함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성명 기재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거인 [] 포함									
초본 교부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전체)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__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일반, ☐ 상세)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7. 변동사유 [] 포함								
	8. 병역 사항 [] 포함([] 기본(입영/전역일자), []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용도 및 목적

※ 세대주와의 관계 "상세" 표기를 선택하거나 이해관계자 발급시에 반드시 작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명서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파.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선택사항 미선택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만 표기됩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등본의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초본의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또는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을 “일반”으로 선택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자녀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상세”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 가족관계(부·모, 자녀 등)가 표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주민등록표상 말소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 표시되지 않음 / [] 표시됨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 표시되지 않음 / [] 표시됨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Application for Viewing or Issuance of a Moved-in Household Certificate

※ Please read the guidanc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before you fill it out. (Front)

Application Number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ly
--------------------	------	-----------------	-------------

	Viewing []	Issuance []
Application Details	Whether to show the full name of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was canceled and the date of moved-in	[] Not displayed / [] Displayed
	Whether to show the full name of a registered person of unknown domicile and the date of moved-in	[] Not displayed / [] Displayed

Applicant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Contact Number

Applicant (Corporate)	Name of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Business)
	Address	
	Name of Visitor	Resident Registration No. Contact No. (Visitor)

Location of the Building/Property Being Requested

Purpose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the viewing 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1)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49-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4(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as above.

Day Month Year

Name/Name of Company

(Seal or Signature)

To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 The Power of Attorney is only completed if you are applying by proxy.

Power of Attorney

I authorize the above-named applicant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of Article 29-2 (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Day Month Year

Delegator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Contact No.
Delegator (Corporate)	Name of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Address	

Submission by applicant	Applicant's Identification Card ※ In case of Corporate applicants, submit a Representative's ID, Corporate Seal Certificate or Seal of Use with an attached Corporate Seal Certificate.	
Documents to be verified by official in charge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if you consent to allow the official in charge to verify the following documents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1.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ppendix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proving that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view or apply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 2.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applicant is a recipient of benefi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 patient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 war veteran,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 Please check [☒] where appropriate if you consent to the official in charge verifying your information regarding the multi-child household through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3. Applicant's Family Relations Certificate(Detailed)	Fee • 300 KRW per viewing • 400 KRW per issuance ※ 500 KRW if fall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9-2 (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 my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shared use as st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rticle 7 (3)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Applicant(Delegato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onsent to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 [☐] 1. I consent to the official in charge verifying the relevant documents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cluding the use of a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organiz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6) (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 [☐] 2. I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bout me by a official in charge of the civil complaint handling agency through a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Civil Petitions Treatment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 If the applicant does not consent to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if the documents are not verifiable through the shar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Applicant(Delegator)

(Signature or Seal)

Notes

- The 'Signature or Seal' field must be signed or stamped, and fingerprints cannot be used. In this case, the signature must be a handwritten Korean full name.
- Foreigners who have registered as aliens or foreign nationality Koreans who have reported their domestic place of residence must present their alien registration c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1) of the Immigration Act or domestic the report card of the place of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an be replaced with thei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report number of the domestic place of residence.
- For Corporate applicants, the 'Representative' field must be signed by a representative or stamped with the corporate seal.
- If the same applicant applies for viewing 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for multiple buildings or facilities for the same purpose based on the same document, he or she may apply in bulk in accordance with Appendix Forms No. 15-2 and No. 16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this case, you must put the two forms together in order, fold the first page (Form No. 15-2) in half, and seal between pages with your seal or signature, where the center fold meets the next page (Form No. 16).
- Only the owner, tenant, leaseholder, lessee, or sales contractor of the relevant building/property can delegate an application to view or issue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In this case, the person applying on behalf of the delegate must submit a power of attorney and proof of identity of the person and the delegate (In the case of Corporate applicants, proof of the identity of the Representative, Corporate Seal Certificate or Seal of Use with an attached Corporate Seal Certificate).
- Anyone who falsely completes an application or power of attorney, such as forging or fraudulently using another person's signature or seal, will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Act.
- If the address of the building/property you wish to verify is incorrect, the relevant household cannot be confirmed through the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 Foreigners and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cannot be the head of household or a cohabitant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so it is not possible to verify whether they are the head of household or a cohabitant through a Certificate of Moved-in Household.
- Those who are eligible for fee exemption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ertified copy or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e as follows:
 -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pplies for offici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item (e) of subparagraph 3 of Article 29-2(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Where a recipient under Article 2(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ies for it;
 -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tropolitan Cit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such as in the event of disasters;
 - Where fee exemption for provid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is prescribed in any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national independenc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priority only)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pplies for it;
 - Where a person who ha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for it;
 - Where a patient suffering from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register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Where a war veteran register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applies for it;
 -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Where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Where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Article 5 or Article 5-2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pplies for it;
 - Where a person who has two or more children (grandchildren in a family consisting only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who are minors on the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applies; and
 - Where fee exemption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주민등록표상 말소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세대순번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성명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정보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세대주								
	최초 전입자								
	세대주								
	최초 전입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동거인이 없는 경우 동거인 정보 우측란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의2(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u>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생략) <u><신설></u>	<u><삭제></u> 제6조의2(통보 서비스의 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을 통해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u>

<신 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7조의2(법정대리인 확인에 관한
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고
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
른 법정대리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별표 1 제8호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 ⑧ (생략)

⑨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부터 영 제17조의4까지,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
----- 17세
-----.

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표 제8호</u>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 ----- ----- ----- ----- <u>별표 1 제8호</u>----- -----. ②·③ (현행과 같음)
---	--